BWDC 2023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부산세계장애인대회

병행세션
Parallel Session

장애 이주민의 인권

Human Rights of Migrants with Disabilities

2023. 8. 9 (수) 16:00~17:30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4호-105호

주최 이주민과 함께 Solidarity With migrants · 이주와 인권연구소 Migration & Human Rights Institute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BWDC 2023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부산세계장애인대회

병행세션
Parallel Session

장애 이주민의 인권

Human Rights of Migrants with Disabilities

2023. 8. 9 (수) 16:00~17:30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4호-105호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중의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이주민은 장애가 있더라도 생계, 주거, 의료와 관련된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 이주민들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재활치료를 포함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맞아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를 조명하고, 장애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정지숙** (사)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16:00-16:05	5′	인사말
16:05-16:15	10′	발표 1. 장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한계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16:15-16:25	10′	발표 2.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16:25-16:45	20′	발표 3. 장애 이주민 당사자 및 가족들의 경험 **최마리아**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 대표
16:45-16:55	10′	발표 4.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본 장애 이주민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6:55-17:05	10′	발표 5. 일본의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의료, 복지, 사회보장 **무라야마 잇페이** 가나가와시티유니언 서기장
17:05-17:30	25′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한-영 동시통역, 러-한 순차통역, 수어통역 제공. 휠체어 이용 좌석 마련

주최 이주민과 함께 Solidarity With migrants · 이주와 인권연구소 Migration & Human Rights Institute · 사단법인두루

발표 1

장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한계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한계

2023. 8. 9. 권영실

bkl 재단법인 동천

1

장애 이주민 관련 법제 현황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 원칙 (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bkl 재단법인 동천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01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bkl 재단법인 동천

2

장애인복지법 외국인규정 연혁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법 외국인 관련 규정 도입 배경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인권센터 공동주최

bkl 재단법인 동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알림·공고·참여

- 위원회 활동
- 공지/공고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홍보자료
- 인권소식
- 자유토론
- 배움터신청

보도자료

HOME > 알림·공고·참여 > 언론보도 > 보도자료

"국내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신청 허용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 등록일 : 2008-09-17 | 조회 : 3564

"국내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신청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왕모(여, 37세, 대만 국적)씨 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 1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시책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영화, 공연 할인 등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두 등록장애인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외국인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촉구

곽정숙 의원 오는 4월 8일 국회서 관련 기자회견 열어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입력 2011-03-30 09:19

장애소수자연대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외국인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

11시 국회 브리핑룸(본청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장애소수자연대는 한국저신장애이인연합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회상장

절단장애인협회 등 총 7개 소수자단체의 연대체로서 2010년 12월 출범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외국인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권의 사각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화교장애인협회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촉구하

서명지가 취합되었으며 4월 8일까지 취합한 서명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바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외국인 장애인등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

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들이 집에서 방치되거나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고통스러

HOME > 장애인 > 인권·사회

세금 똑같이 냈는데 외국인이라 장애인 혜택 못 받아?

정두리 기자 | 승인 2011.04.08 13:30

외국인 장애인등록 허용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등록제 문제 심각...사각지대 해소 위해 외국인 장애인등록 반드시 돼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장애소수자연대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8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2. 1. 2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신설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bkl 재단법인 동천

난민의 장애인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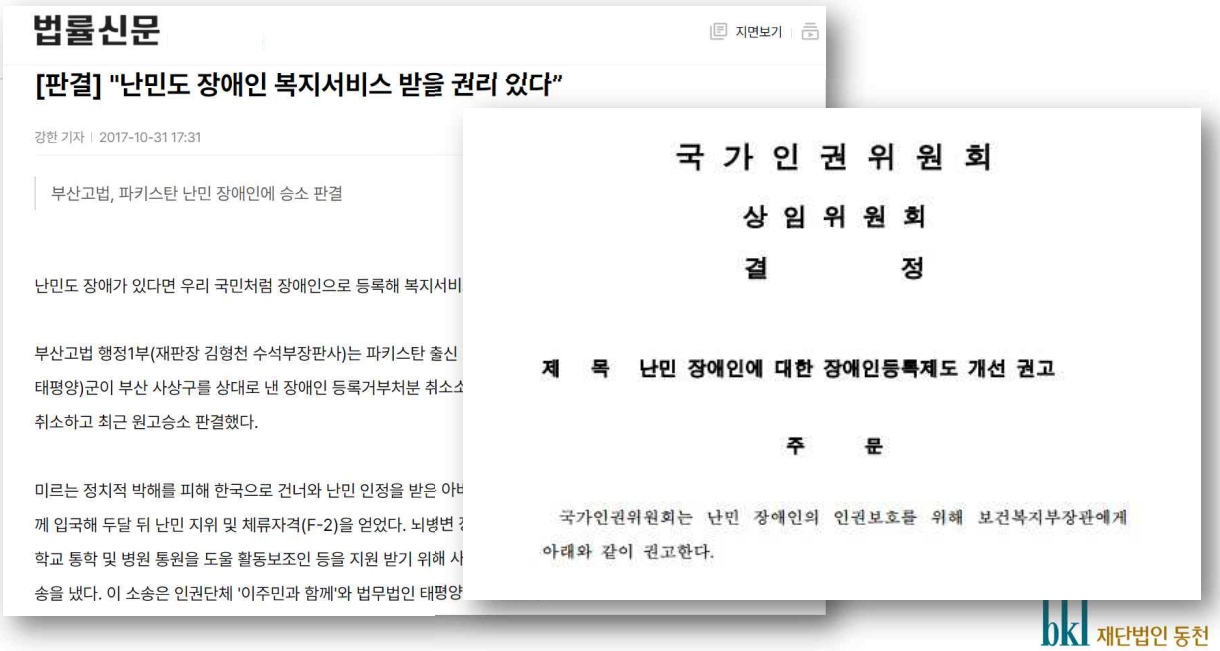

법률신문

지면보기

[판결]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강한 기자 | 2017-10-31 17:31

부산고법, 파키스탄 난민 장애인에 승소 판결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
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
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와 법무법인 태평양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 12. 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개정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bkl 재단법인 동천

3 장애이주민 관련 정책의 한계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등록이 가능한 이주민의 체류자격

2023년 1월 기준

체류자격	인구(단위: 명)
전체 체류 등록외국인	1,195,251
- 영주 체류자격	177,413
- 결혼이민	135,136
- 난민인정자	1,343
전체 외국국적동포	802,743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499,625
총 체류외국인	2,146,579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인구	813,517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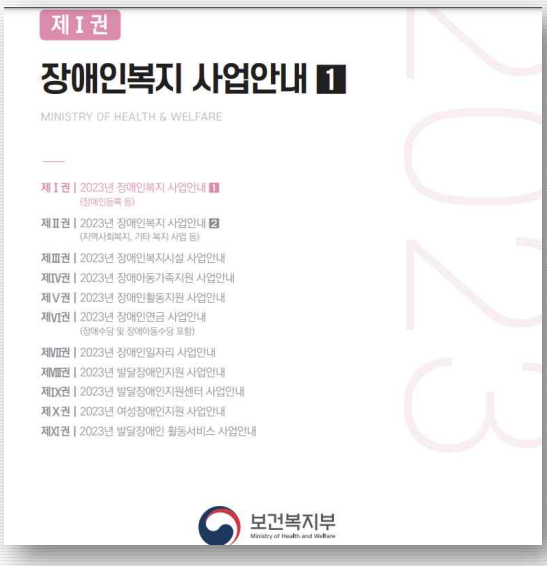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 분야

주요사업	분석 제도 및 사업
연금 · 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 수당 등
보육 · 교육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의료 · 재활	장애의료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자리·융자 지원	장애인고용서비스 등
공공요금 등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감면 등
세제 혜택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등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이주민 지원여부

1. 연금 · 수당

주요사업	지원여부
장애인 연금	난민인정자
장애수당	난민인정자
장애아동수당	난민인정자
장애아동 양육수당	난민인정자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이주민 지원여부

2. 보육 · 교육

주요사업	지원여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난민인정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불명확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외
어린이집 우선입소	제외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이주민 지원여부

3. 의료 · 재활

주요사업	지원여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 건강보험 차상위(제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세대주가 영주, 결혼이민, 난민인정자
발달재활서비스	제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장애인 포함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이주민 지원여부

4. 서비스

주요사업	지원여부
장애인 활동지원	난민인정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불명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 지원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불명확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등록 무관 등록외국인
무료 법률구조제도	등록외국인

bkl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의 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이주민 지원여부

5. 일자리 융자지원 / 6. 공공요금 등 / 7. 세제혜택

주요사업	지원여부
장애인 고용서비스	불명확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록장애인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등록장애인 포함
공공요금 등 감면	등록장애인 포함
세제혜택	등록장애인 포함

bkl 재단법인 동천

4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장애인복지법령 개선 방향

bkl 재단법인 동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01 2014년 제1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

-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 장애 지원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할 것

02 2019년 제2-3차 정부보고서

- 장애인복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현금급여의 경우 국외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유사 타법령에서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를 들어 일자리 지원, 편의이동 관련 감면, 할인 등의 경우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bkl 재단법인 동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03 2022년 제2-3차 심의 최종견해

- 위원회는 이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 **이주 장애인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이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마친 후에도 장애인연금 등 필수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려하며, 협약 제28조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역량강화와 경제적 포용증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2의 관계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중략)
-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bkl 재단법인 동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01 장애인등록 제한

-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난민 vs. 그 외 장기체류자격 소지자
-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고려할 때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 ✓ 장애인복지사업은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 아닌 국가의 책임
- ✓ 일정기간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공동체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받을 권리 (거주지원칙)

02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제한

-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난민 vs. 국민
- ✓ 난민은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의해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가 보장됨
- ✓ 결혼이주민은 이미 다수의 사회보장법령에서 국민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짐
- ✓ 장애인복지법상 구체적 위임이 부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bkl 재단법인 동천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01 장애이주민 권리보장의 근거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의무
-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주민의 " 주민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제16조)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제17조)

02 국제인권규범 및 권고사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년)

"비시민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

bkl 재단법인 동천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03 개정 방향

- 장애인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재고 필요
-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장애인등록시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 폐지
- 국적을 이유로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차별 금지
- 국적법 및 각종 사회보장법령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bkl 재단법인 동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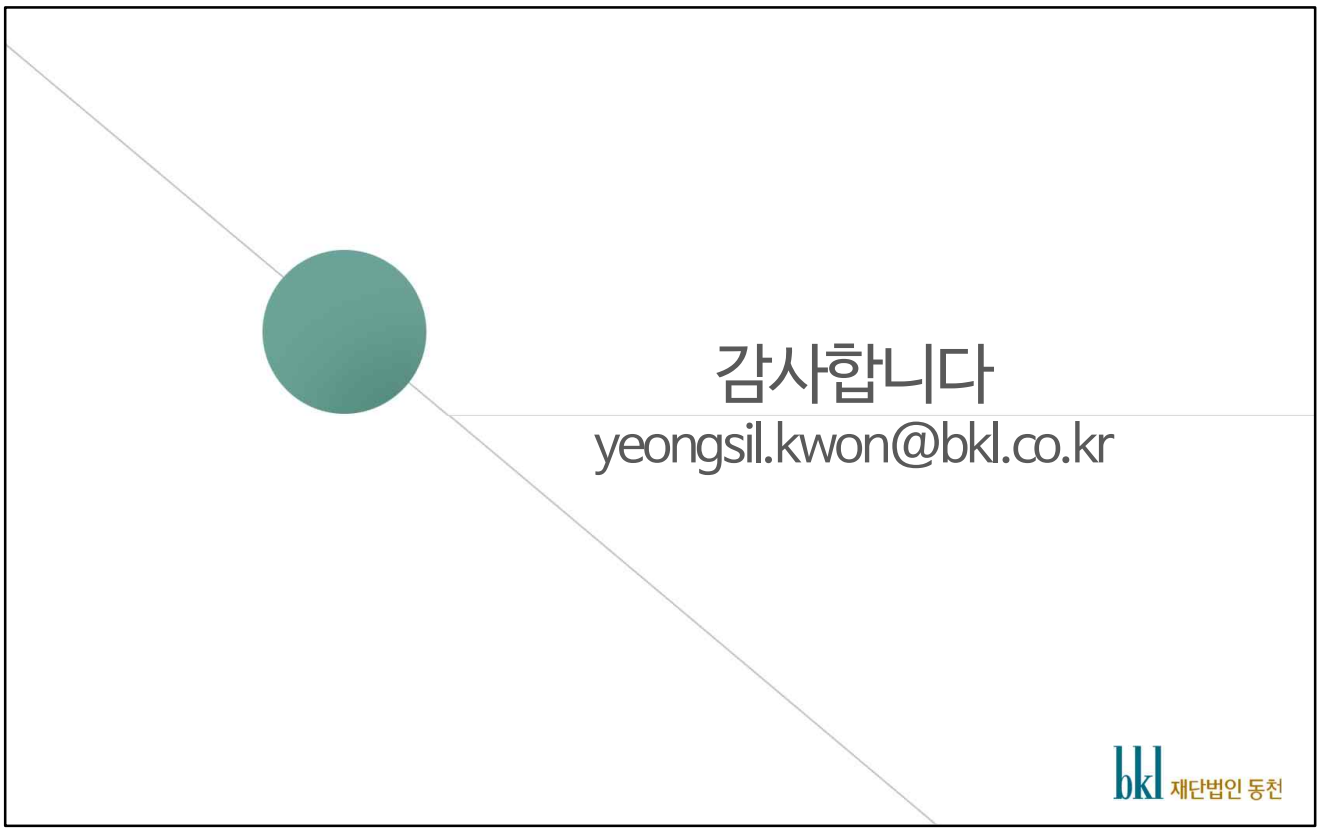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yeongsil.kwon@bkl.co.kr
bkl 재단법인 동천

발표 2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BWDC 2023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 이주민의 인권
Human Rights of Migrants with Disabilities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

김 사 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Migration & Human Rights Institute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내국인
일상 활동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	5.0%	5.2%
해당 장애를 의사로부터 진단받았다.	66.0%	
장애인등록을 했다.	1.9%	

내국인의 장애인등록 비율 5.1%,
국내 체류 이주민의 장애인등록 비율 약 0.3% (2022년 8월 기준)

장애인 등록의 걸림돌

체류자격 제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 F-5(영주), 결혼이민(F-6), 난민인정자(F-2-4)로 한정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주민(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만 포함
서비스 제한	장애인 등록을 해도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 (실익이 없음)

국내에서 장애를 갖게 되면 장애인 등록은 커녕, 외국인 등록 유지도 불투명

장애 이주민 실태조사

실태조사 기간	2023년 1월 ~ 현재 (진행 중)
실태조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충남, 경남
실태조사 대상	총 20명

↳ 아동 17명+성인 3명, 장애인 등록 2명+장애인 미등록 18명, 신체 장애 5명+정신 장애 15명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어려움

- 언어
- 체류
- 의료
- 건강보험
- 생계
- 기타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이가 말을 못 한다고 걱정을 했어요. 학교 다니게 되면서 방과 후에 공부방을 다니게 됐는데 공부방 선생님이 '아이가 이상하다, 하는 행동이 4~5세 정도 같다'며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민간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검사를 해봤더니 경도 지적 장애가 나왔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고 특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냥 부모가 외국인이니까 한국어를 못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특수 학급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를 한국어 반에 보내고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요."

"발달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받으면 작성할 문항이 엄청 많아요. 검사지만 3~4개고, 문항은 총 5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전부 한국어로만 돼있어요. 영어도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들도 이해를 못 해요. 제대로 된 검사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어려움

- 언어
- 체류
- 의료
- 건강보험
- 생계
- 기타

"부모와 아이 둘 모두 미등록 체류자로 있다가 법무부 구제대책으로 작년에 체류자격을 받았어요. 중학교에 다니니까 D-4(일반연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지금으로서는 이주아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가서 D-2(유학) 체류자격을 받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말도 못 하는 자폐아인데, 어떻게 대학에 가겠어요. 벌써부터 부모들이 걱정이 많아요."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영주(F-5)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주(F-2)를 받고 3년 뒤에 영주(F-5)를 신청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한테 준 동반 비자는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연장 가능하대요. 제가 영주자격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아이는 18세가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안 되면 아이는 체류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등록보다 이제는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어려움

언어
체류
의료
건강보험
생계
기타

"제일 큰 어려움이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심리치료, 언어치료 이런 게 우리 형편에는 너무 비싸요. 다행히 장애인학교 다니니까 언어치료는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심리치료도 예전에 했을 때 많이 도움 됐기 때문에 받게 해주고 싶은데, 한 시간에 5~6만 원이예요. 매달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약 타는 것도 몇 십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는 못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 받고 하면 조금은 좋아지겠죠. 지금처럼 혼자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도 없고, 차도 없고, 안 그래도 자꾸 탈골되는 아이를 혼자 어떻게 데리고 병원에 다니겠어요. 장애인등록을 해도 외국인은 활동보조 서비스 못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어려움

언어
체류
의료
건강보험
생계
기타

"노숙을 하다가 발견되어서 저희 이주여성 쉼터에 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건강보험료 체납만 400만 원이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2019년 건강보험 의무화되면서부터 한 3년치가 체납된 거죠. 대부분 화교들은 이미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해서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나오는데, 이분은 F-2(거주) 체류자격이라서 무조건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되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고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이런 저런 걸 챙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쉼터에서 부업을 해서 일주일에 한 5만원 벌거든요. 그걸로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하고, 또 매달 14만원 추가로 내고 있어요. 화교는 간이 귀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정 능력은 보거든요. 소득도 너무 적고, 그나마 다 보험료로 나가니 소득,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휠체어 장애인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오빠가 둘 있어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감면도 못 받으니까.. 보험료만 매달 14만원인데, 그것까지 오빠들이 내주고 있으니 미안하죠."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어려움

언어
체류
의료
건강보험
생계
기타

"장애아를 키우는 집들 대부분이 싱글맘 가정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도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은 다 떠나고, 양육비 같은 거 도와주는 것도 하나 없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재활치료는 고사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에요. "

"엄마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아빠 혼자 일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먹고 살기만도 어려운데, 아이한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직도 그때 진 빚을 갚고 있어요. 지금 아이 목에 호흡을 위해서 관을 꽂고 있고, 배에도 음식 넣는 관을 꽂고 있거든요. 이걸 병원에 가서 하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직접 사서 엄마가 소독하고 교체하고 해요. 병원에서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혼자 서고 걸으려고 하거든요. 보조기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공장에서 남는 재료로 보조기구를 만들어줬어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어려움

언어
체류
의료
건강보험
생계
기타

"아이가 잠깐 사이에 집을 나가요. 그래도 바로 알아채면 뛰어 나가서 찾아오는데, 두 번은 못 찾았어요. 경찰에 실종신고 하고, 행전안전부 실종 문자 띄우고.. 한 번은 수원에서 찾았고, 또 한 번은 세종에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찾았어요. 자폐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GPS 달린 팔찌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애인 등록 된 아이들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대요.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엄마가 미등록 체류자라고 엄마를 출입국에 인계한 거예요. 지금 아이 찾는 게 중요하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다행히 아이는 찾았는데, 엄마는 출입국에 붙잡혀 있고.. 언론에 알려서 뉴스에 나오게 했더니 풀어주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한테 스마트 워치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모금해서 사줬어요. 지금은 사라지면 그걸로 찾고 있어요."

장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안

언어	- 장애 이주민의 진단, 검사, 치료에 통번역 지원
체류	- 체류자격 변경 시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조건 완화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장애인 등록 허용
의료	- 저소득 장애 이주민에게 재활치료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차별 철폐 - 장애 이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규정 적용
생계	- 저소득 장애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기타	- 국적, 체류자격, 장애인 등록과 무관하게 장애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발표 3

장애 이주민 당사자 및 가족들의 경험

최마리아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 대표)

장애 이주민 당사자 및 가족들의 경험

최마리아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대표)

저는 2021년 4월에 설립한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의 대표이자,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최마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을 만들고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모야모야병으로 아프게 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인천 지역에서 고려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이하 문화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화원에서 고려인 공동체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 한 기자분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 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장애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마친 뒤, 그 기자분은 저에게 저처럼 가족들의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고려인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자분과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원 중인 고려인 가족들을 함께 만나 사연을 들었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난 뒤 문화원의 손정진 대표님이 저에게 고려인 장애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임의 대표를 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장애 분야에 대해서도, 장애가 있는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단체를 이끌어나간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러 다니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결국 장애인 가족을 둔 여덟 가정의 명단을 들고,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은 전국에 있는 100여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의 장애 가족들은 다양한 질환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의 대부분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은 회원들의 회비와 다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후원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가족모임의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물품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하고,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통역 지원도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매장, 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비도 지원합니다.

저희의 활동은 주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위로해줍니다.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에 가입한 뒤 경제적 지원, 정신적 위로, 정보 제공을 받은 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의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계정을 통해 활동 및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회원들은 다양한 회의 자리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 정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인터뷰나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우리의 삶과 어려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고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재외동포청 유치에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설날에는 회비와 후원금을 모아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아이들이 잠시라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본 부모들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려인 중에 F-4(재외동포), F-5(영주) 체류자격 소지자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H-2(방문취업)나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고려인들도 많지만, 그들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포”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장애 이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 중 한 명이 고려인이 아니라면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데, 이 체류자격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려인 장애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비쌉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휠체어를 쓴 고려인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은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등

록을 위한 진단 비용 100만 원이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다른 가족들에게 생계를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한국인 장애인처럼 장애인 연금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난민들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바우처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체류자격이 F-1(방문동거)이라서 장애인 등록을 못 했고, 그래서 꿈이든 카드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어머니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고려인 가족들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고, 귀(외이)가 없어서 보청기를 삽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체류자격이 F-1(방문동거)이기 때문입니다.

간질 때문에 계속 쓰러지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는 5세이고, 그중 4년 동안 간질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비용도 42만 7천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한 발달 문제라고 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큰 문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유치원,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입학한 장애아동들의 부모 대부분은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하지만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보내는 부모가 많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비와 재활치료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 명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아동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픈데,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재활치료의 경우에도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상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도 장애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여기서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재활치료가 너무나 비싼데, 재활치료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장애 아동이 2명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정에게 도움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이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들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모른다고만 합니다.

최근 한 회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부딪치는 한 가지 어려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2번 주차했는데 2번 다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지만 복지카드가 없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장애인 이주민들이 복지카드 없이도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려인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조국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고, 더 이상 "너희들은 외국인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가족들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이주민들도 필요한 돌봄과 치료를 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이주민 한 명을 도와주면 가족 전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가족은 행복해지고 항상 고마워할 것입니다!!!

발표 4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본 장애 이주민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본 장애이주민

-장애이주민의 인권-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다른 나라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대만 국적 중증장애인

대만 국적 장애인

: 지적, 언어, 지체 중복 중증장애인 (지능지수 14, 사회연령 3.5세)

: 초등학교부터 인강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5년간 생활

: 행정착오로 시설급여, 관리번호로 의료급여 받고 있었음

: 생활비는 시설종사자들이 조금씩 모아서 지원

: 해당 시설 거주인 탈시설 진행 중 확인과정에서 당사자 국적 확인

: 시설 폐쇄 예정, 대만 국적 미등록 상태로는 전원이나 탈시설 자립 불가

(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대만 국적 미등록 장애인 국적취득 과정

국적취득 과정의 문제

: 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문제

: 임시자격 이후 귀화 시 3년 체류기간 필요

: 임시체류자격으로 장애인등록 및 급여받기 어려움

: 임시체류자격(F-2-99) 발급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단

: 외국인 건강보험의무가입제도 대상자 건강보험료 약13만원씩 납부

: 간이귀화 신청 생계유지능력 증명 필요

(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대만 국적 미등록 장애인 국적취득 과정

국적취득 과정 문제해결 절차

: 장애인단체, 공익변호사단위 공대위 구성

: 범칙금 면제 요구 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진행

: 간이귀화신청 허가에 대한 진정서 제출

: 중증장애인 국적취득 시 자산증명 부당함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2021 국제장애인컨퍼런스 토론 진행 (법무부 참석)

: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상황 문제제기

2022년 3월 10일 귀화증서 발급/현재 지역사회 자립생활

(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비국적 장애인 상담사례

필리핀 발달장애 자녀 실종 상황

: 필리핀 미등록 이주민 발달장애 자녀 2명 중 1명이 실종

: 자녀 실종신고를 위해 경찰서 방문 체류 상황 확인한 경찰이 '자진출석 서약서'서명 강요 / 어머니와 발달장애 자녀들 분리

고려인 비자 종류에 따른 장애인등록 어려움

: 인천광역시 거주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에 따라 장애등록 어려움 문제제기

난민 인정받기 이전에 장애를 가진 난민 문제

: 난민 거주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난민신청자 중 장애를 가진 사람 다수 이에 대한 지원 문제

베트남 국적 부인 청각장애인 부부의 출산 및 비자 문제

: 청각장애 부부 부인이 베트남 국적 관광비자로 거주 출산 과정 비용부담 체류 가능한 비자신청 등 지원요청

(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DDASK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ty in Korea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우리
평등한 삶
함께 만들어가기

비국적 장애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

국적 장애인의 현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 능력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사람으로 인식)
: 기본적인 이동권, 교육권 등의 보장도 어려운 상황
: 장애등급제도에 따라 장애가 있지만 등록이 어려운 사람이 다수 존재
: 실제 기초생활수급제도, 활동지원제도 등을 제외하고 지원이 매우 부족
: 정부 등을 상대로 계속 장애인정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상황
: 이주 장애인 등 비국적장애인의 존재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

DDASK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ty in Korea

비국적 장애인의 현실

: 비국적자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이라는 편견으로 이중차별 상황

: 장애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범위 장애인 축소 비국적장애인 제외

: 비국적자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

: 외국인으로 장애인등록을 해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 경제력 입증 등 장애인의 국적취득은 더 어려움

: 장애로 인한 일상 어려움과 언어적 어려움 이중 발생, 지역사회 소통과 상황 이해 대응의 어려움 (형사사건 발생시, 장애 자녀 입학 문제 등)

〈외국인 장애인등록현황 (2022년 8월 현재)〉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자폐	뇌병변	정신	내부
전체 (5,821) 명	1,602	498	1,673	53	211	917	87	780
재외국민	121	58	90	4	23	85	10	70
난민인정자(F-2)	11	4	8	3	10	9	0	5
재외동포(F-4)	862	240	1,048	30	85	543	23	461
영주(F-5)	396	133	278	9	73	201	34	163
결혼이민자(F-6)	212	63	249	7	20	79	20	81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할 것들

- 2022년 8월 통계상 외국인 등록장애인 수 5,821명 2020년 전체 등록장애인 수 2,633,026명 중 0.2%, 결국 예산을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은 형식적인 장애인등록으로 생색내기만 하는 정부의 차별과 편견의 결과

- 국적 비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야한다는 인권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비국적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함께 힘을 실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위한 활동을 전개

(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우리가 함께 해야할 것들

-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
-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연대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주제안에 비국적장애인의 권리를 함께 담아가는 것이 필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별에 대응하는 조직들과 연대하여 함께
-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인권위 진정 등 문제제기의 방법들도 적극 활용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DDASK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감사합니다

발표 5

일본의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의료, 복지, 사회보장

무라야마 잇페이 (가나가와시티유니언 서기장)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2023.8.9

일본의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의료, 복지, 사회보장

가나가와시티유니언
무라야마 잇페이

- 질병, 부상, 실업, 사고, 산재, 장애, 자연재해 등 어려움에 처한 상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적인 책임으로 해결해야 함

- 헌법 제25조「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 사회복지제도의 역할

⇒ 당연히 일본에 살고 있는 이주자에게도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오랫동안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적 조항으로 이주자를 배제해 왔지만･･･
ex. 재일한국조선인의 무연금 문제 등

- 1981년 난민협약 비준
- 1994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 199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

⇒ 국내법의 국적조항 폐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그러나 생활보호법, 연금법(恩給法),
전쟁희생자원호관계법 등에는 국적조항이 남아 있음

장애가 있는 이주자의 의료･복지･사회보장

- 생활보호법

ー법 조문에「국민」, 제도의 대상은 국민

ー이주자에게는 권리가 아니라「보호의 준용」
보호급부의 내용은 동일함
불복신청(심사청구)은「할 수 없음」

실제로 이주자에 대한 생활보호는
1980년대까지는 체류자격의 종류·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된 사례가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었음

⇒1990년 입관법 개정, 뉴카마(New Comer) 외국인의 급증

- 1990년 10월 후생성 보호과: 생활보호관계지도 직원 연합회의

「생활보호의 대상인 외국인은、특별영주자, 입관법 별표 제2의 외국인(영주자, 일본인의배우자등, 영주자의배우자등, 정주자), 입관법 상의 난민으로 제한」

ex. 그 외 체류자격이라도、「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특정활동」체류자격, 난민신청자에게 적용한 사례,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자의 부모와 일본국적을 가진 자녀 세대를 보호한 사례도··

- 건강보험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경우 가입 가능

ex.비정규체류자는‥

—피부양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대상

ex.가방면자(仮放免者)인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 사례도

2018년 8월 후생노동성: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 공적 서류 요구

- 국민건강보험

ex.이미 국적조항이 폐지되었지만

—81년 난민협약 비준에 따라,

1993년 3월, 국민건강보험 과장 통지:1년 이상의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입자격 제한

—2004년 1월,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거부 사례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

⇒ 이후 주민기본대장법 상의 주민등록을 한 이주자(3개월 이상 체류자격,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

- 국민연금, 후생연금

ㅡ주민기본대장법에 의한 외국인 주민은 적용 대상
단기체류 등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자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로 확인되면 적용 가능

ex.비정규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할 수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은 권유 받은 사례도..

ㅡ장애연금의 수급 요건
초진일·장애등급·보험료납부의 요건

- 산재보험

ㅡ「노동자」로서 취업 중 업무 상의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ㅡ요양비, 휴업보상, 장애보상 등 지급

＝체류자격의 유무·종류에 상관없이 이주자에게도 적용

ex. 장애등급 제14급～제8급은 일시금 지급,
제7급 이상은 연금 지급, 자국으로 귀국 혹은 해외 이주한 경우에도 계속 지급

자립지원의료
「갱생의료」「육성의료」「정신통원의료」

- 2006년 4월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

「갱생의료」: 신체장애의 치료비를 공비 보조
－신체장애인 수첩 교부
－시각, 청각, 언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등

＝체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이 있으면 가능

ex.2012년 입관법 개정 이전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체류자격 없는 이주자가 장애인수첩을 교부 받은 사례도･･

「육성의료」: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의 치료비를 공비 부담
－시각, 청각, 언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등

＝체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이 있으면 가능

ex.이전에는 체류자격 없는 이주자에게 적용 사례가 있었지만 ･･ 2000년 4월 오오와키(大脇) 의원「질문주의서」

그러나, 2006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의「자립지원 의료비 지급인정 통칙 실시요강」에 의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적용 제외로

- 「정신통원의료」: 정신장애의 외래진료 일부를 공비 보조

＝체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이 있으면 가능

ex.이전에는 체류자격 없는 이주자도 가능했었지만··

그러나, 2006년 「자립지원의료비 지급인정 통칙 실시요강」에 의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적용 제외로

-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조치입원: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적용, 그 비용은 전액 공비 부담

비정규이주자에 대한 의료·복지·사회보장

- 2000년 4월 오오와키 마사코(大脇雅子) 참의원 의원:「외국인의 의료와 복지에 관한 질문주의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원조산, 양육의료, 육성의료, 갱생의료, 모자수첩, 예방접종 등)를 정부답변으로 인정

-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대우법」,「구급의료비 손실보전 사업」,「무료저액진료사업」

비정규이주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ex. 2012년 7월 외국인등록제도 폐지에 의해 새로운 체류제도 개시

- 2018년 8월10일、총무성 자치행정국 외국인주민기본대장실, 총무성 자치행정국장 사무연락:

「입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이외의 체류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의 관리 등에 관한 조치 관련 각 부성청의 대처에 대해」

ex.2012년 7월 4일부터, 이후 3년 마다 개정

—26가지 행정서비스 공지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정신장애인의 조치입원 등을 포함

참고문헌・자료

- 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編
  『外国人の医療・福祉・社会保障 相談ハンドブック』
  2019年6月
- 髙本郁「外国人の医療・福祉・社会保障に関する基礎知識－外国人の生きる権利を守るために－」
  『移住連、2022年伴走支援講座』2022年7月